

의안번호	2216336
의 퇴 인	소병훈 의원
회 답 일	2026. 2. 4.
추계번호	26C0422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고독사 실태조사 수행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경우,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.9억원(연평균 3,800만원)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고독사 실태조사 수행 주기 단축 (안 제10조)	0	0	0	190	0	190	3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¹⁾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 (고독사 실태조사)	고독사 실태조사 수행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0조 (고독사 실태조사)	○	○ 기존 사업비를 고려하여 추계

1) 「고독사 예방 기본계획」 수립 시 생애주기를 보다 세분화하도록 규정하는 안 제6조의 경우, 기존 기본 계획 수립 예산 내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제외(참고로, 보건복지부는 2022년에 해당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억원의 연구용역비를 지출)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고독사 실태조사 수행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최근 고독사 실태조사 소요비용 단가를 준용하여 수행 주기를 단축할 경우 추계기간 내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 - 보건복지부는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수행을 위해 1.9억원의 연구용역비를 지출
 - 추계기간 내 고독사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단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 - 2027년부터 3년 주기로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 - 가장 최근 실태조사가 2022년에 수행되었으므로, 현행법 유지 시 다음 실태조사는 2027년 수행될 것으로 예상됨
- 추계결과, 고독사 실태조사 수행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할 경우,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.9억원(연평균 3,800만원)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2] 고독사 실태조사 수행 주기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현행 유지(5년 주기, A)	190	0	0	0	0	190	38
개정안 시행(3년 주기, B)	190	0	0	190	0	380	76
추가재정소요(B - A)	0	0	0	190	0	190	3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□ 해당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